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315

제안년월일 : 2022년 12월 20일
제 안 자 : 기 획 경 제 위 원 장

1. 수정이유

○ 일부 조문의 용어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바 이를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로, 공업기능은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 등으로 용어를 수정함(안 제3장의 제목, 안 제11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장의 제목 “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2항 중 “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”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”으로, “비공업기능”을 “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”으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3장 **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**	제3장 **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**	제3장 **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**
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생 략)	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생 략)	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**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**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하고, 특정개발진흥지구는 **비공업기능**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	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**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**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하고, 특정개발진흥지구는 **비공업기능**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	② ---------- **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** ---------- **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** ----------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37조제1항제9호”를 “제37조제1항제7호”로, “공업기능”을 “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37조제1항제9호”를 “제37조제1항제7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산업개발진흥계획”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계획”으로 “산업개발진흥지구”를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진흥지구 지정”을 “진흥계획 수립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”을 “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”으로, “비공업기능”을 “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6항 후단 중 “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”을 “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

또는 취소” 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수립하여야” 를 “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.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정일” 을 “지정대상지 선정일” 로, 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” 를 “제출하여야” 로 한다.

제14조제1항제1호 중 “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” 을 “지정대상지의 선정·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하고,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"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.	4. ---------- 제37조제1항제7호 및 ----------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----------.
5. "특정개발진흥지구"란 법 제3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라 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·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.	5. ---------- 제37조제1항제7호 ----------.
6. "산업개발진흥계획 및 특정개발진흥계획"(이하 "진흥계획"이라 한다)이란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(이하 "진흥지	6. 산업·유통개발진흥계획 -------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----------

구"라 한다)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·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.	----------.
7. "권장업종"이란 입지상 비교우위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지구 지정 시 고시한 업종을 말한다.	7. ---------- 진흥계획 수립 ----------.
8. ~ 13. (생 략)	8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3장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	제3장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
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	제11조(진흥지구의 지정·운영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하고,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비공업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·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.	② ----------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·물류기능 ---------- 주거기능, 공업기능, 유통·물류기능 및 관광·휴양기능 외의 기능 ----------.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시장은 직접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대상지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4	⑥ ----------

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	----------. 선정된 지정대상지를 변경 또는 취소 ----------.
⑦ <신 설>	⑦ 시장은 지정된 진흥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제12조(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진흥지구를 지정할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12조(진흥계획의 수립 등) ①----------수립하여 지정 신청과 함께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③ ---------- 지정대상지 선정일---------- 제출하여야 --.
제14조(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	제14조(산업·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

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생 략)	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1.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	1. ------ 지정대상지의 선정·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
<신 설>	2.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
2. ~ 4. (생 략)	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